

# 기후변화협약 무역관련 조치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A study on the Trade-related Measures under Climatic Change Convention & Corresponding  
Plan of the Korea

홍길종(Gil-Jong Hong)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강사(주저자)

전병영(Byungl-Young Jeon)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교신저자)

##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 론   |
| II. 국제적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협약     | 참고문헌     |
| III. 기후변화협약체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Abstract |
| IV. 기후변화협약 무역관련 분야 대응방안   |          |

## 국문초록

최근 들어 이런 환경문제와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체제는 단순히 환경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활동에 있어 주요 동력원인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는 곧 생산활동에 대한 규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으나 환경기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무역과 연계를 강화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체제가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무역과 환경문제와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무역관련 연계에 관해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무역관련조치, 환경문제

## I. 서론

지난 시기 산업화는 인류에게 삶의 질 향상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선사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대기, 수질오염의 문제, 생물의 다양성 보존 문제, 인구,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오존층 파괴 문제, 기후변화 문제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환경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환경의 보전과 개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이 설정되었다.<sup>1)</sup>

최근 들어 이런 환경문제와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환경을 무역장벽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sup>2)</sup>

매우 다양한 국제환경문제들 중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이 큰 것이 기후변화의 문제이다. 기후변화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데, 인위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는 UN기후변화협약 체제를 구축하고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UNCED에서 UN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에 의한 온실가스의 배출규제를 통하여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1997년 12월 일본의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과 동구권 38개국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6가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로 하는 이른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을 탄생시켰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8일 UN에 비준서를 기탁하였다.<sup>3)</sup>

기후변화협약체제는 단순히 환경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활동에 있어 주요 동력원인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는 곧 생산활동에 대한 규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으나 환경기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무역과 연계가 강화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무역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시키고 소득과 후생수준을 높여, 궁극적으로 빈곤을 타파하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재원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 존재한다.

1) WCED, Brundland Commission Report, Our Common Future, 1988.

2) 김홍균, 국제환경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서강경제논집』, 제29집 1호, 서강대학교 경제학연구원, 2000.5., p.235.

3) WSSD 한국대표단,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협상 동향, 외교통상부 환경협력과 자료, 2002.9.

그러나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자유무역이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덤핑을 유발하여 환경기준이 낮은 나라의 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해 지속적인 국제적 협의가 요청되고 있다.<sup>4)</sup>

최근 환경문제와 무역을 연계시키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제협약에 환경보호를 전제한 무역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UN에서 추진 중인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이다.

현재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관련하여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 제조업체의 대응방안 등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와 무역의 연계에 관한 연구, 특히 기후변화협약체제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체제가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무역과 환경문제와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나타난 무역규제에 대해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국제적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협약

### 1. 주요 국제환경협약

대기오염,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 해양의 폐기물 등과 같은 환경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가진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이다. 197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많은 환경협약들이 체결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CITES, 바젤협약,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등이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러한 협약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 1)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오존층 보호를 위해 1985년3월에「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이 채택되었으며, 그 후 1987년 9월 협약 이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속 의정서인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되어 현재까지 5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4) 김지준, 무역과 환경문제의 대두, 외교통상부 무역과 자료, 2002.

동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Ozone Depleting Substances : ODS)들의 생산과 소비량을 1994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해 ODS의 생산 및 소비를 전폐하는 시기를 선진국보다 10년 후로 유예하고(5:1), 개도국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5:2, 10조). 또한 다자기금(Multilateral Fund)을 설치하여 개도국의 의정서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 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ITES는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의 수출·입국가들이 상호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무질서한 채취 및 포획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협약은 규제대상 동식물을 멸종위기의 정도에 따라 부속서1, 2, 3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입시 지정된 관리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 및 협약 내용에 위반된 거래의 금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3)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특히 개도국으로의 이동을 통제하기위해 1989년 3월에 채택한 국제환경협약이다. 바젤협약은 1980년대에 선진국 제조업체들이 국내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발생된 유해폐기물을 값싸게 처리하기 위해 개도국 또는 동구로 수출하게 됨에 따라 국제사회가 이의 통제필요성을 느끼고 제정하게 되었다.

바젤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협약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 I에 규정된 폐기물(45종)로서 부속서III에 규정된 유해 특성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1998년 유해폐기물 리스트(Annex VIII)를 채택). 한편, 이에 속하지 않더라도 수출·수입·경유국가의 국내법이 유해폐기물로 규정한 폐기물, 그 밖의 폐기물(Other Wastes), 부속서 II에 규정된 폐기물(자정폐기물)등이 대상이 된다.

〈표 1〉 무역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주요 다자간환경협약

다자간협약	채택연도	발효연도	가입국수	WTO 회원국수	목적
CITES	1973	1975	161	13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규제

다자간협약	채택연도	발효연도	가입국수	WTO 회원국수	목적
몬트리올의정서	1987	1989	184	143	오존층과피물질의 대기 방출 규제
바젤협약	1989	1992	156	124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
생물다양성협약	1992	1993	187	140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향유
바이오안전성의정서	2000	미발효	47	3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동, 처리 및 이용
기후변화협약	1992	1994	188	143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
교토의정서	1997	미발효	106	86	기후변화협약의 보완과 추진
로테르담PICguqdir	1998	미발효	41	34	특정 유해화학물질의 국제무역시 사전적 정보교환
스톡홀름 POPs 협약	2001	미발효	30	22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배출량 감축

자료 : WTO, WTO 문서 WT/CTE/W/160/Rev.2

#### 4)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과 함께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 회의(UNCED) 직전에 채택되어 UNCED에서 각국이 서명을 한 국제환경협약으로 생물의 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당사국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 보유국과 비보유국으로 나누고 있으나 이는 의무 문제와는 관계가 없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자발적으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 의무를 부담하는 여타국가(other parties)로 구분되어 있다.

#### 5) 기후변화협약(UNFCCC)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러한 재앙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92년 6월 리우에서 열린「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협약이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2. 기후변화협약의 체제 및 논의 동향

### 1) 기후변화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1) 채택 배경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으로 1992년 6월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으며, 1994년 3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이후 1995년부터 매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가 각료급으로 개최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현재 193개 국가와 EU가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하였다.

#### (2) 주요 내용

기후변화협약은 전문과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기본원칙, 의무사항,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조직사항 등으로 대별된다. 기후변화협약은 제2조에서 그 목적을 천명하고 있는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시스템의 위험한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과다한 축적으로 기후시스템이 위험한 상태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농업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는 제3조에서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다<sup>5)</sup>. 첫째, 기후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과 차별성의 원칙이 기본원칙이라는 점이다.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들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주원인이라는 점에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성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예방의 원칙, 비용효과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발전의 권리를 인정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경제발전은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가 필연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넷째, 각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개방적 국제경제체제의 도모를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이유로 국제무역에 있어서, 일방적 규제, 임의적 차별, 가장된 제약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다섯째,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해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각국의 능력, 사회경제적 여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5) 한진희·윤경수, 『기후변화 문제의 주요 이슈 및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10., p.505.

이러한 기본원칙은 교토의정서(1997), 발리행동계획(2007), 코펜하겐 합의문(2009), 그리고, 칸쿤결정문(2010)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 2)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to the UNFCCC)

### (1) 채택 배경

1997년 12월에 일본의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의 후속 조치로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이후 2005년부터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MOP)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병렬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양 당사국총회는 10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192개 국가와 EU가 가입하고 있다.

### (2) 주요 내용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Annex I 국가)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 전체의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5% 감축하되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8%에서 +10%까지 차별화된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대상국가는 Annex I 40개국 중 협약 미비준국인 터키, 벨라루스를 제외한 38개국이며, 6개의 가스(CO<sub>2</sub>, CH<sub>4</sub>, N<sub>2</sub>O, HFC, PFC, SF<sub>6</sub>)가 감축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감축목표 부담에 따라 선진국들은 실제 배출량에서 20-30% 정도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보다 경제적인 방법으로 의무이행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의무이행수단인 교토메카니즘을 도입하였다. 여기에는 공동이행제도<sup>6)</sup>, 청정개발체제<sup>7)</sup>, 배출권거래제<sup>8)</sup> 등이 있다.

셋째 제4조에 규정된 것으로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비용 달성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EU 15개국이 개별 국가의 사정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교토의정서에서 EU 국가들에게 부여한 8% 감축목표를 공동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EU Bubble이 가능하게

- 
- 6)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란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 A국이 선진국 B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A국의 배출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선진국간에 2008년부터 시행된다.
- 7)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란 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 A국이 개도국 B국에 투자하여 획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선진국 A국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모든 국가가 대상이며 2000년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8)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란 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감축의무를 부여받은 38개 선진국간에 2008년에 시행된다.

된다. EU Bubble은 앞으로 개도국에도 감축의무가 주어질 경우 아시아 지역의 Bubble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Ⅲ. 기후변화협약체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1. 선행연구의 검토

국제적 환경규제가 경제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과 무역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협약과 무역의 연계성을 연구한 논문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기후변화협약과 WTO의 협약의 국내법으로 적용함에 있어 상호 충돌가능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서원상의 “다자간환경협정과 WTO협정의 융합”(2009), 이로리의 “다자간환경협약과 WTO협정과의 관계”(2005)가 대표적인 예이다. 상기 연구들에서는 다자간환경협정과 WTO협정이 국내법 적용에 있어 양 법체제간의 상호 충돌을 효과적으로 융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후변화협약을 WTO 협정에서 수용하는 국제적 논의를 분석하는 대한 연구이다. 김진수는 “다자간환경협약의 무역조치에 대한 WTO협상”(2003)에서 WTO의 무역과 환경에 관한 협상과 그 전망을 다자간환경협약의 무역조치를 상호 비교하여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제시하고 있으며, 김태현은 “국제환경협약과 WTO체제의 Green라운드”(2006)에서 국제환경협약과 WTO체제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Green라운드의 국제무역장벽화 경향을 분석하고 있다.

셋째, 이소영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라벨링과 WTO규범에 의한 규율가능성”(2011)과 같이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서의 탄소라벨링제도,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에 대한 규제가능성과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반면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각 조항을 분석하여 무역과 연계될 수 있는 조항을 선별하고 이러한 조항이 WTO 협정에 어떠한 관계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WTO 협정과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국제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 1) 국제환경규제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환경규제가 갖는 환경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규제는 그 의도와는 다르게 타국에 대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처럼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개별 국가가 가진 환경관련 기술이나 제품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환경규제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영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비용 상승이다. 비용의 상승은 환경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대표적이며 직접적인 영향이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높아진 수준의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하거나 비싸더라도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자재를 구매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업활동은 비용의 상승으로 나타난다. 환경규제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추가적 비용은 환경규제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그것에 따른 효과 측정 또한 쉽지 않다.

둘째, 미충족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입 제한이다. 몇몇 환경규제는 각 환경규제가 제시하고는 수준을 제품이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과징금 등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규제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은 납, 수은, 카드뮴, 크롬, 폴리브롬화페비닐(PBBs), PBDEs 등 여섯 가지 유해 물질이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엔나협약은 오존층 파괴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유해물질에 대한 금지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환경규제를 준수하지 못하여 시장에서 배제되는 경우 그 피해는 심각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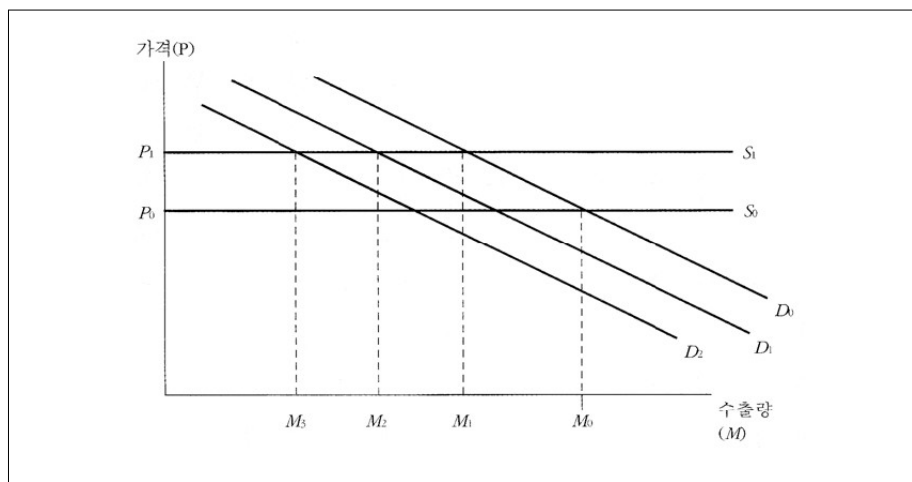
셋째, 새로운 시장의 형성이다. 환경규제가 기업이나 국가경제에 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 역시 존재한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사 여러 국가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녹색산업을 중요한 분야로 설정하고 투자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녹색산업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기업이나 국가에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 지난 금융위기사 주요국에서 발표한 환경관련 분야 투자규모는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환경규제에 직면한 기업이나 국가가 해당 환경규제 관련 신기술이나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환경규제의 확대강화는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

## 2) 국제환경규제가 무역거래에 미치는 영향

국제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는 김홍균 외, 『환경경제학』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환경규제는 무역효과 측면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난다. 국제환경협약, 개별 환경규제, 환경레벨링 그리고 ISO 14000 등은 결국 생산비의 상승을 초래하여 수출단가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환경상계관세나 국경세조정의 경우처럼 바로 가격상승의 형태로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이유 중 어떤 이유에 해당하더라도 국제환경규제는 수출국의 수출공급곡선을 상향 이동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그림 1>에서는 특정 수출시장에서의 수출국의 수출량이 국제환경규제로 인해 감소되는 효과를 수출국의 공급곡선은 수평이며, 동종의 제품일지라도 생산국가가 다르게 되면 완전대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2 가지 가정 하에 분석하고 있다.



<그림 1> 국제환경규제의 무역효과<sup>9)</sup>

우선 국제환경규제 이전의 수출량은 그 시장에서의 수요곡선( $D_0$ )과 공급곡선( $S_0$ )이 만나는  $M_0$ 에서 결정된다. 국제환경규제에 의해 수출국의 공급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S_0 \rightarrow S_1$ ) 우선 동 제품에 대한 수입국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수요량이  $M_0$ 에서  $M_1$ 으로 감소하게 된다(負(-)의 무역창출효과). 수입국에서의 수입제품의 가격상승은 수입국 소비자들이 수입품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자국 제품으로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수입제품에 대한 수

9) 김홍균 외, 『환경경제학』, 2002, p. 367.

요는  $D_0$ 에서  $D_1$ 으로 더욱 위축되게 된다(수입대체효과).

더욱이 여타 수입제품에 비해 수출국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수입국 소비자는 수입품 중에서도 여타 수입제품을 더 선호하게 되고 수출국 제품의 수요는 더욱 작아지게 된다. 즉, 수요곡선이  $D_1$ 에서  $D_2$ 로 이동하고 수입국 시장에서의 수출국 제품의 판매량은  $M_2$ 에서  $M_3$ 으로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환경규제는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 상승을 유도하거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여 국제무역의 자유화에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다. 이는 점진적이고 자유로운 무역을 원칙으로 하는 WTO 각종 협정과 상반되어 충돌될 수 있다.

### 3. 기후변화협약의 무역관련 조항들

기후변화협약체제에는 무역과 관련된 조항은 기본원칙이 규정된 2개 조항과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교토의정서 3개의 조항 등 총 5개의 조항이 있다.

#### 1) 무역관련 기본원칙 조항

기후변화협약체제에서 무역과 관련하여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조항은 기후변화협약 제3조 5항과 교토의정서 제2조 3항이다.

먼저, 기후변화협약 제3조 5항에는 “기후변화협약 당사자국들은 기후변화문제를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들이 보호무역주의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조치가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인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의 수단을 구성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제2조 3항에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국제통상에 미치는 효과 및 여타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자에 미치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영향을 포함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 조에 의거한 정책과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이 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히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협약체제는 기후변화대응조치를 이유로 세계 각국들이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을 형성하여 보호무역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제한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은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 2)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

기후변화협약체제에서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조항은 교토의정서 제2조 1항, 제17조, 제18조 등 3가지 조항이다.

먼저, 교토 의정서 제 2조 1항에는 “부속서 I 당사국이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하여 의정서 제3조의 배출량 제한을 지키고 감축 공약을 달성함에 있어, (1) 국가 경제의 관련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성 증진, (2) 관련 국제 환경 협정상의 공약을 고려하여 온실가스(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것을 제외함)의 흡수원과 저장소의 보호·증대, 지속가능한 임업관리 관행·조림 및 재식림의 촉진, (3) 기후변화의 고려사항에 비추어 지속가능한 형태의 농업 촉진, (4) 신규·재생가능한 형태의 에너지, 이산화탄소의 흡수·저장 기술 및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연구·증진·개발 및 이용 증대, (5) 모든 온실가스 배출 부문에 있어, 협약의 목적과 시장수단의 적용에 위배되는 시장 불완전성·재정 인센티브·세금과 관세의 면제 및 보조금의 점진적 감축 또는 단계적 폐지, (6) 온실가스(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것을 제외함)의 배출량 제한 또는 감축 정책과 조치를 촉진할 목표로 관련 부문의 적절한 개선 장려, (7)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것을 제외함)의 배출량을 제한·감축하는 조치, (8) 폐기물 관리와 에너지의 생산·수송 및 배분에서 회수와 사용을 통한 메탄 배출량의 제한 및/또는 감축 등 8개의 정책과 조치를 이행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정책 및 조치 중 무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고려하여 볼 수 있는 문제는 에너지세, 탄소세, 자발적 협정, 보조금 지급, 라벨링 및 인증제도, 배출권거래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WTO체제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교토의정서 제17조에서는 “당사자총회는 특히 배출량 거래의 검증·보고 및 계산을 위한 관련 원칙·방식·규칙 및 지침을 정한다. 부속서 나 의 당사자는 제3조상의 공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배출량 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거래는 그 조상의 수량적 배출량 제한·감축 공약의 충족을 위한 국내 조치에 보충적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조항으로 자국 내의 감축의무를 초과달성한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에게 잉여배출권을 판매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시장기구를 통하여 잉여배출권이라는 상품의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배출권거래제도는 무역의 원리와 그 기본개념이 같다.

마지막으로 교토의정서 제18조에서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기에서 비준수의 원인, 형태, 정도 및 빈도를 고려하면서, 그 결과에 관한 예시목록

의 개발을 포함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이 준수되지 아니한 사례를 결정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절차 및 체계를 승인한다. 기속적인 결과를 수반하는 이 조상의 모든 절차 및 체계는 이 의정서의 개정에 의하여 채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정서에 의한 회의에서 의정서 불이행이라는 결과에 관한 예시 목록을 포함하여 의정서의 규정이 준수되지 아니한 사례를 결정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절차 및 체계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 IV. 기후변화협약 무역관련 분야 대응방안

### 1. 온실가스 감축 압력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산화탄소 삭감 의무 부담 시기와 형식 등을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에너지 등의 현실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3차 공약기간부터 이행의무를 검토하되 그 이전에는 비 구속적, 자발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한다는 것이다.<sup>10)</sup>

그러나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개도국의 참여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참여를 바라는 EU 등이 이러한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압력은 점차 거세질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감축목표 수용시 선진국에 대한 요구조건 등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또한 감축목표별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행체제 및 통계체제도 정비해야 하겠다.

### 2. 대외협상력 제고

온실가스 감축 압력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외협상력이 일정수준에 이르러

10) 임계규·강운영, 기후변화협약의 국내 산업구조 및 국제경쟁력 파급효과, 에너지경제연구원, 2000.12., pp.19-20.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과 함께 대외협상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광범위한 무역과 환경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의견을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과 환경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하다. 즉, 국내의 유관연구소 및 학계의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의 연대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문제는 국제적인 사안인 만큼 국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주요 사안별로 지역별 협조체제 또는 개발도상국간의 협조체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 3. 관련법 정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우선 관련법부터 정비하여야만 한다. 그 방향은 기업들에게 에너지 소비구조를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키워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등과 같은 교토메커니즘에 국내시행을 위한 근거마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경제적 수단을 도입하고 감시체제를 확실히 갖추자는 것이다. 물론 모든 관련법의 정비는 개방화가 긍정적인 환경효과를 가져온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법률의 정비는 산업계 관련기관 및 학계, 소비자, 환경단체 등과의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4. WTO와 조화로운 제도의 운용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내정책 및 조치 중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조치는 에너지세, 탄소세 및 기타 세금부과를 통한 에너지 가격정책, 강제적 또는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성 표준, 환경라벨링 및 인증제도, 환경친화생산공정에 대한 보조금 등이 있다.<sup>11)</sup> 따라서 WTO의 규정과 환경문제가 상충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조화로운 국내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1) 탄소세 및 기타 제세 문제

탄소세 및 에너지세는 지구온난화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으며,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배

11) Gary p. Sampson, Trade Environment and the WTO : The Post-Seattle Agenda, Policy Essay No.27,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Washington DC, 2000, p.86.

출에 따른 온실효과가 주원인이다. 기후변화협약의 목표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이 탄소 세 또는 에너지세 제도를 도입하였다.<sup>12)</sup>

탄소세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화석연료의 탄소성분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이다.<sup>13)</sup> 탄소세는 일반적으로 부과되며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킨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은 수입품에 비해 동종 국내 상품은 탄소시장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탄소세 미부과 상품과 경쟁에서 불리하다.

이와 관련하여 상품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기준으로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배출세가 국경세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배출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며 담세자와 납세자가 동일하므로 직접세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탄소배출세는 간접세를 대상으로 하는 국경세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만일 탄소배출세를 부과하지만 특정산업에 대해서 이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으로서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게 되며 수입국의 상계조치에 직면 할 수 있다.

## 2) 에너지 효율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수입품에 보다 강화된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대국에 대한 무역규제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그 기준이 내국민 대우 규정(national treatment rule)에 맞게 적용된 것이라면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국내 기업을 위하여 외국기업을 불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고안된 것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sup>14)</sup> 또한 에너지효율규정을 강제적 기술규정으로 시행하기에 가장 장애가 되는 실체적 요건은 기술규정이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 중 가장 무역을 제한하지 않는 방법이어야 하며,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표준에 기초하여 기술규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3) 환경보조금 지급

환경보조금(environmental subsidy)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은 청정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보조금, 기업의 오염감축 성과에 따른 정부재정 지원, 저리 용자와 같은 오염감축을 위한 재정지

12)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2002, p.129.

13) 권오상,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0, pp.466-467.

14) Assuncao, Lucas,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and Trade Regime", Trad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CTSD, 2000, p.126.

원 등이 있다.<sup>15)</sup> 또한 세액공제(tax credit)와 같은 지원도 가능하다. 부속서 I 당사국은 자국 내의 기업들이 배출을 감소하도록 자극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책들을 이용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연료대체기술 등에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그 자체로는 무역분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이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기업이나 산업에 주어져 경쟁적인 외국 기업이나 산업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국제무역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WTO의 보조금 협정 규정과 충돌하게 된다.<sup>16)</sup>

보조금이 국제무역상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경우, WTO는 보복조치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7)</sup>

#### 4) 환경라벨링(Envrionment Labelling) 및 인증제도

각 국가는 환경에 유해한 제품, 공정, 생산방식 등을 규제하고(PPMs), 제품의 에너지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라벨링 및 인증제도(ISO 14000 등)를 시행할 수 있다.

환경라벨링(Environmental Labelling)은 통상 특정제품이 같은 범주 내의 다른 상품보다 환경 친화적인 것을 나타내는 인증(seal)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WTO가 제안하는 각국의 문서규정에 보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환경라벨링에 대한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 규정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WTO CTE).

그러나 환경라벨링 제도는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수입상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수 없게 하거나 동 상품에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무역 제한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주장은 미국과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라벨링이 강제적인 기술규정인가 혹은 자발적인 표준인가, 그 적합성에 대한 판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등의 문제는 TBT 협정의 범주에 포함된다.

환경라벨링 및 인증제도는 동종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다른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특정제품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 결과 그 특정제품의 수출업자에게 절차 및 비용상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제품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무역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

15)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대응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999.12., pp.413-416.

16) 임종수 외, 환경보전의 국제화와 정책대응(II), 1995, 12., p.43.

17) WTO 보조금협정규정, 제2조 1(a)항, 제3조 1항, 제 5조.



### 5) 배출권거래제 도입

2002년 11월 8일 교토의정서 비준안을 UN에 제출함으로써, 교토메커니즘 중청정개발체제의 도입은 그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면 즉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배출권거래시장에도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이행을 전제로 국제시장에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이행 없이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요소 즉, 보고, 감시, 이행 등이 불투명하므로, 우리나라 업체의 국제 배출권거래시장 참여는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배출권의 국내 시장가격과 국제 시장가격의 비교가 불가능하여 역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목표배출량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방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성공적인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은 배출감축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제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성공적인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형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의 규제제도와 배출권거래제도간의 조화이다. 두 제도간의 불균형은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장벽을 형성할 뿐 아니라 거래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둘째, 경쟁적인 배출권시장의 형성이 필요하다. 규제를 위한 지나친 거래 제한은 배출권 수요를 감소시켜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셋째, 일관된 배출목표의 설정이다. 배출권의 가치는 배출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배출목표의 잦은 변동은 결국 배출권 가치의 안정성을 잃게하여 배출권의 수요를 감소시키며, 배출권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시킨다. 넷째, 배출권거래제도의 신축적 운영 및 거래규칙의 투명성을 위한 감시체제의 확보이다. 다섯째, 배출권거래제는 타 경제적 정책수단과 병행하여 실시될 때 그 효과가 커질 수 있다.

## IV. 결 론

지난 시기 산업화는 인류에게 삶의 질 향상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선사하였다. 그러나 대기, 수질오염의 문제, 생물의 다양성 보존 문제, 인구,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오존층 파괴 문제, 기후변화 문제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환경문제를 제기하였다.

매우 다양한 국제환경문제들 중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이 큰 것이 기후변화의 문제이다.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고,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기후변화협약 체제하에서는 당사국들이 일정한 양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선진국들에 비해 환경기준이 낮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및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많이 미흡한 편이다.

무역규제는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남용되기 쉬운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목적의 무역조치는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역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무역규제보다는 국제협력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구해 무역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체제가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무역관련 연계에 관해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예측적 연구가 한계였으며 각 정책수단에 대한 비용·편익에 대한 계량분석도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부족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참 고 문 헌

- 강상인 외, 『환경, 무역 연계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IV, -오염자 부담원칙과 국제무역의 연계 논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 권오상,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0.
- 김태현 “국제환경협약과 WTO체제의 Green라운드”, 담론 201 9(1), 2006.
- 김지준, “무역과 환경문제의 대두, 외교통상부 무역과 자료”, 2002.
- 김진수, “다자간환경협약의 무역조치에 대한 WTO협상”, 『사회과학논집』, 제22집 제2호, 2003.
- 김홍균 외 7인,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2.
- 김홍균, “국제환경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서강경제논집』, 제29집 1호, 서강대학교 경제학연구원, 2000.
- 산업연구원, 『기후변화협약 7차 당사국총회 타결의 의미』, 2001.
- 서원상, “다자간환경협정과 WTO협정의 융합” 성균관법학』 제21권 2호, 2009.
- 우석훈, 『미국의 교토의정서 관련 입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협약대책단, 2002.

- 유하상,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규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이로리, “다자간환경협약과 WTO협정과의 관계”, 『국제경제법연구』 제3호, 2005.
- 이소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라벨링과 WTO규범에 의한 규율가능성”,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4호, 2011.
- 임재규·강운영, “기후변화협약의 국내 산업구조 및 국제경쟁력 파급효과”, 에너지경제연구원, 2000.
- 한진희·윤경수, 『기후변화 문제의 주요 이슈 및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10.
- WSSD 한국대표단,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협상 동향, 외교통상부 환경협력과 자료, 2002.
- Assuncao, Lucas,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and Trade Regime”, Trad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CTSD, 2000.
- Beatson, J., *Anson’s Law of Contrac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Gary p. Sampson, *Trade Environment and the WTO : The Post-Seattle Agenda*, Policy Essay No.27,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Washington DC, 2000.

## ABSTRACT

### A study on the Trade-related Measures under Climatic Change Convention & Corresponding Plan of the Korea

Gil-Jong Hong\* · Byung-Young Jeon\*\*

The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global climate change, global warming, ozone depletion,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been caused by the rapid economic growth, increasing in use of fossil fuels for industrialization and scientific technology development.

Between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 the new paradigm, “Sustainable Development” is presented to the world now.

To achieve global environmental objectives, som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cludes trade regulation. However Kyoto Protocol has no provisions to regulate trade and is not in force yet.

By the effectuation of the Kyoto Protocol, Korea will be faced very serious situation because of her high Dependency on Foreign Trade and Fossil Fuel- intensive Industries .

We must be able to gain a sense of ownership in the out come of the WTO/CTE discussions by contributing meaningfully to the creation of a constructiv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concerns.

**Key Words** : Climatic Change Convention, Trade-related Measures, Kyoto Protocol

---

\* Instruct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Kangwon National University